

의안 설명서

[제 1 호 의안] 제 23 기(2022.01.01 ~ 2022.12.31)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(현금배당 1 주당 250 원 승인 포함)

상법 제 449 조 및 당사 정관 제 44 조에 의거하여 제 23 기(2022.01.01 ~ 2022.12.31)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※ 제 23 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s://dart.fss.or.kr>)에 공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「Ⅲ. 경영참고사항」 중 “2.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 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s://dart.fss.or.kr>) 및 회사 홈페이지(<https://www.ubiquoss.com>)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배당관련사항 : 현금배당 1 주당 250 원, 배당금 총액 4,128,228,500 원

[제 2 호 의안] 이사 선임의 건

상법 제 382 조 및 당사 정관 제 30 조에 의거하여 사내이사 1 명, 사외이사 2 명의 선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이사 선임 후보자

성명	출생연월	구분	임기	신규선임 여부	추천인	주요경력
전무영	1968.01	사내이사	3 년	신규선임	이사회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<input type="checkbox"/> (前) 케이에스넷 경영기획본부장 <input type="checkbox"/> (現) 유비쿼스홀딩스 관리본부장
박찬구	1963.07	사외이사	3 년	신규선임	이사회	<input type="checkbox"/>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<input type="checkbox"/> (前) 웅진케미칼 대표이사, 도레이케미칼 대표이사, 세방전지 대표이사
강인구	1968.04	사외이사	3 년	신규선임	이사회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(前) 법무법인 서강 변호사, 법무법인 남명 대표변호사 <input type="checkbox"/> (現) 법률사무소 남명 대표변호사

[제 3 호 의안]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

상법 제 542 조의 12 제 2 항 단서규정 및 당사 정관 제 40 조의 2 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의 분리 선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후보자

성명	출생연월	구분	임기	신규선임 여부	추천인	주요경력
남택호	1960.07	사외이사	3 년	신규선임	이사회	<input type="checkbox"/>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<input type="checkbox"/> (前) 한영회계법인 Partner, 지암회계법인 이사 <input type="checkbox"/> (現) 삼화회계법인 회계사

[제 4 호 의안]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상법 제 542 조의 12 및 당사 정관 제 40 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2 명의 선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후보자

성명	출생연월	구분	임기	신규선임 여부	추천인	주요경력
박찬구	1963.07	사외이사인 감사위원	3 년	신규선임	이사회	<input type="checkbox"/>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<input type="checkbox"/> (前) 웅진케미칼 대표이사, 도레이케미칼 대표이사, 세방전지 대표이사
강인구	1968.04	사외이사인 감사위원	3 년	신규선임	이사회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(前) 법무법인 서강 변호사, 법무법인 남명 대표변호사 <input type="checkbox"/> (現) 법률사무소 남명 대표변호사

[제 5 호 의안]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상법 제 388 조 및 당사 정관 제 34 조에 의거하여 제 24 기(2023.01.01 ~ 2023.12.31) 중 이사에게 지급할 연간 보수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전기(제 23 기) 이사보수 지급액

구 분	이사총수 (사외이사수)	보수한도액	보수지급액
제 23 기 (2022 년)	6 (3)	2,000,000,000 원	788,294,750 원

◎ 당기(제 24 기) 이사보수 한도액

구 분	이사총수 (사외이사수)	보수한도액
제 24 기 (2023 년)	6 (3)	2,000,000,000 원